

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(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모두를 통칭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(이하 “통합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통합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3. 각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위원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
5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통합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배정인원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 및 학장이 소속 전임교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1. 연합신학전문대학원 1명
2. 벤처대학원 및 글로벌창업대학원 1명
3.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명
4. 특수대학원 2명
5. 인문사회대학 1명
6. 생명보건대학 1명
7. 공과대학 1명
8. 과학기술융합대학 1명
9. 예체능대학 1명

제4조(임기) ① 위원장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) ① 위원장은 통합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제6조(사무관장)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관장한다.

부 칙(2019. 5. 16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